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4175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12-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30

홈페이지(준비중)

불그레홍게

정 보 공 개 서

불그레홍게 가맹본부 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2024 . . .

불그레홍게 가맹본부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신후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된 사무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21번길 9-41, 1층(산곡동)		
전화번호	070-7576-1107	팩스번호	0504-403-0578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10 -8385 -0578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가맹본부의 업종
3. [볼그레홍게] 업종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볼그레홍게』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년간 [볼그레홍게] 가맹점 수
6. [볼그레홍게]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볼그레홍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판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여부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별첨

- [별첨 1] 재무현황
- [별첨 2] 직가맹점목록
- [별첨 3] 당사가 정한 필수설비내역
- [별첨 4]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 [별첨 5] 가맹금 예치신청서
- [별첨 6]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별첨 7]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정보마당’_‘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_‘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불그레홍게 가맹본부		
영업표지		불그레홍게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21번길 9-41, 1층(산곡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09.22	이 혜 민	070-7576-1107	0504-403-0578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388-52-00893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혜민/ 불그레홍게 가맹본부	불그레홍 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21번길 9-41, 1층(산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 혜 민	070-7576-1107	0504-403-057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해당없음]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불그레홍게] 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불그레홍게	가맹본사의 영업표지
상 호	불그레홍게 점	지역명 또는 건물명을 참고
상표(서비스표)	불그레홍게	(제 43류) 상표등록출원 출원번호 : 40-2024-0132035
상표(서비스표)		(제 43류) 상표등록출원 출원번호 : 40-2024-0132034
상표(서비스표)		(제 43류) 등록번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100,089	-	-

※ 개인사업자로 직영점의 매출을 기재하였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이혜민	대표자	2023.09.22.~현재	불그레홍게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최근 3년 동안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서비스)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신청여부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사용허용기간)
불그레홍게	당사에서 부여한 상표권	출원일자: 2024.07.18	출원번호 40-2024-0132034	이혜민 (출원인)	출원중
불그레홍게	당사에서 부여한 상표권	출원일자: 2024.07.18	출원번호 40-2024-0132035	이혜민 (출원인)	출원중

	당사에서 부여한 상표권	출원일자:	출원번호	이혜민 (출원인)	출원증
--	--------------------	-------	------	--------------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중 상표권 **불그레홍게** 은 2024년 7월 18일 출원
진행한 상태입니다.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불그레홍게』 시작한 날 :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09월 22일)

2. 『불그레홍게』 연혁

☞ 『불그레홍게』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불그레홍게 가맹본부	불그레홍게	이혜민	가맹사업 예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 로421번길 9-41, 1층(산 곡동)

3. 『불그레홍게』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식품)
불그레홍게	한식	홍게 (해산물 류)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불그레홍게』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1	0	1
서울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1	0	1
대전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불그레홍게』 가맹점 수 가맹점의 수 [해당없음]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2022년						
2023년						

※ 가맹사업 예정

6. 『불그레홍게』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당사는 [불그레홍게]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해당없음]

※ 가맹사업 예정

지역구분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평균	3.3㎡ 당	상한	3.3㎡ 당	하한	3.3㎡ 당
전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볼그레홍게]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해당없음]

연도	영업증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가맹사업 예정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해당없음]

※ 당사는 지역본부를 운영중에 있지 않습니다.

10. 직전사업년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와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	032-361-0105

2) 가맹금 예치절차

☞ 당사가 정한 예치 기관의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당사의 가맹예치신청에 관한 소정 서식을 작성합니다.
- (2) [(주)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가맹금을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 (3) 예치방법은 주거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필요)
- (4) 오프라인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맹본부 혹은 (주)신한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에 가맹본부상호 등 을 확인한 후 금액을 입력(입금)하시면 됩니다.

※ 상기 예치 방법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한은행 인천영업부금융센터 문의

※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해당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의결일)	조치내용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불그레홍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금이천칠백십이만천원 (₩27,121,000)<부가세포함/33㎡(10평)기준>**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별도구입 비용 및 매장특성에 따른 별도공사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11,000				-
가맹비	7,700	계약체결시	본영업표지 가맹계약서 제 16조 가맹금의 반환참조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불가	가맹비는 소멸성비용
교육비	3,300	계약체결시	-	교육진행완료	-

※ 당사는 가맹비 수령의 대가로 영업표지 사용허락 및 가맹점운영권 부여, 계약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권리, 지역상권부여 및 보호, know-how 및 기술전수, 조리 및 각종 교육 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는 1일 동안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해당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잔 존 채무와 손해배 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채무 및 손 해배상액이 있 는 경우 등	가맹계약상의 미이행 채 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합계]	[13,000]
가맹비	7,7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4)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 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내부인테리어	자율	16,500	1,650	- 계약금(50%) : 인테리어공사계약 체결시 -중도금(40%):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잔금(10%): 공사완료후 3일내	공사 전 계약취소	기준면적 10평 (33㎡) 입니다.
외부익스테리어	자율	770	77			
장비(기기)	자율	4,235	423.5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포스기	포스피드(업체)	33	3			
조리 기물류 27종	자율	605	60.5			
의탁자	자율	390	39			
소스류	일부 자율	132	13.2			
소모품 19종	일부 자율	880	88			
주류	자율	352	35.2			
음료류	자율	56	5.6			
기타식품류	일부 자율	528	52.8			
해산물류 (주재료)	미정	2090	209			
포장용기	일부 자율	550	55			
합계		27,121	2,712.1			

※ 합계의 평당금액(면적 3.3㎡당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별도공사 (건물의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복도, 외부 공사, 냉난방, 전기/가스증설, 화장실, 테라스, 조형물, 외부 덱트 등) 등 은 가맹희망자의 사정에 따른 여부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시청,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재료인 해산물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상황 및 수급 등 변수에 따른 공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 에 따른 실제 비용은 차이가 발생 할 있으며,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본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 분석→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이거나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 불가 사유	비 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최초교육 3,300	교육 실시 전	교육 미실시	교육 실시 후	

		수시교육 보수교육 -발생시협의 (부가세 포함)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분담율: 행사별 실비 협의	판촉진행 정산 서면 또는 POS통지후 2주 이내	판촉 활동 미실시	판촉 활동 실시 후	실시 여부 합의하여 결정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분담율: 가맹본부 100%,	광고진행 1개월 전 서면 또는 POS통지후 2주 이내	광고 활동 미실시	광고 활동 실시 후	실시 여부 합의하여 결정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분담율: 가맹본부 40%, 가맹점사업자 60%	통지 후 2주 이내	간판 미설치	간판 설치 후	-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사안별 협의	사안별 협의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감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본사가 지정한 POS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포스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 하셔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고처리 방안

☞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 및 제공주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불그레홍게]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처분일 2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으로 당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양수인은 그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부담 및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6)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
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
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
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
(₩1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
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
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가맹본부 영업표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
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향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
맹본부와 협의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자세한 설비 및 원부재료 등은 별첨표를 참조하세요.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주요메뉴> 홍게찜 및 해산물류 (오징어,백고동,홍합,가리비,새우 등) <사이드 메뉴> 찐옥수수 마요밥 파인애플샤베트 라면 류 등 <음료 및 주류> 탄산음료 주류(소주,맥주)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2회 위반 시 - 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 및 시정요구 3회 위반 시 - 계약 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표 외의 상품·용역을 임의로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상품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시/서면 통보 후 시정 요구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시/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및 물품공급 중단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 해지

※ 당사는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문형식의 서면 및 안내서면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불그레홍게 가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 등 영업형태가 동일한 업종으로 홍게 해산물 등 동일, 유사한 메뉴 및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	불그레홍게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3,000m)	별지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으로의 영업지역(쇼핑몰, 백화점, 마트,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에 관하여는 별도 영업지역으로서 특수상권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재조정 사유 발생 시 2) 당사 담당팀 검토 3)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4) 가맹점사업 자서면 통지 5) 가맹점사업자 동의 (합의) 6)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불그레홍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씩 갱신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경영에 필수적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와 귀하는 공사가 개시되기 10일 전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 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8조 제1항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9. 가맹본부가 지정한 중요 공급 원·부 재료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원·부 재료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사입 하여 사용하는 경우	
10.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11.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 14조 제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 내용에 의거하여 해지사유를 지정하였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0. 가맹점 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제 39조
회사의 경영방침의 변경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관련계약조문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제35조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의사에 따라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규계약 시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 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단,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 문제는 거래 당사자간의 사안으로 가맹본부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관련계약조문 제36조 영업의 상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불그레홍게]**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사업을 경영하거나 투자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불그레홍게 가 판매 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 등 영업형태가 동일한 업종, 홍게 및 해산물 등 해당표지의 동일 유사메뉴를 표방하는 업종	1.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승인 요청 2.당사 담당자 검토(시장조사포함, 30일내외 소요) 3.관련 내용의 허가여부 통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본부 영업표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4:00 ~ 03:00 (권장)	월 26일 (권장)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불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33㎡(10평) 기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위생, 매출관리, 각종 설비 관리, 원부재료 관리 등	담당자 매장방문 위생,청결상태 확인 상담일지 작성 및 가맹점사업자 확인	방문 또는 전화 월 1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 취급 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 총 금액의 50%	광고 총 금액의 50%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2주일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분할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 총 금액의 50%	광고 총 금액의 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개별 행사	판촉진행 행사별 실비 가맹본부협의	판촉진행 행사별 실비 가맹본부협의	판촉기획→판촉진행→판촉행 사완료→분담금통지서발송→ 수령 후 2주일이내 지급	판촉진행 행사별 실비 가맹본부협의
	할인 멤버십및 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 위 금액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의 비밀유지 의무(제41조 제1항 내지 제2항)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제41조 제3항)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당사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제 40조 제4항에 따라 1일 금십만원(₩100,000원)씩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가맹계약서의 자점 매입에 관한 조항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 매입을 한 경우 금일천만원(₩10,000,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8조 제5항 절차에 의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본 계약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그 지연이자는 연 15%로 합니다.
- 6)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부가세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가맹희망자 문의	- 이메일, 전화문의, 홈페이지 상담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47	해당 정보공개서 13~19P (Ⅳ.가맹점사업 차의부담) 관련내용참고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 전화상담 - 본사 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해당영업표지 현재기준)	D-46~45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선정 등	필요시 실시 (점포 최종결정: 가맹희망자)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 가맹계약 체결 - 지정 금융기관에 가맹금(계약금) 예치	D-30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9~27(3일)	
실내/외 공사 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	D-26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 공사 실시(내,외장 등)	D-25~6(21일)	
교육	- 기본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1일	D-6일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의 공급	D-5~2 (3~4일)	
영업 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의 시작	D-day (영업시작일)	

※ 위 표에 따른 일정 및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한 비용 및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시 특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불그레홍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최초교육	제품 및 메뉴 조리 서비스교육 본사 규정	이론 및 실습교육	계약후 개점전까지	필수
수시교육	신메뉴 출시 및 조리메뉴얼 변경 등	이론 및 실습교육	협의	필요시
보수교육	제품 및 서비스 교육 및 영업방침 등	이론 및 실습교육	협의	필요시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불그레홍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최초교육	3	3,300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수시교육	추후 공지	교육실비를 책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추후 공지
보수교육	추후 공지	교육실비를 책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추후 공지

※ 교육시간 및 비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초교육은 1일교육 3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개업시 교육 및 모든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업시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